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70

발의연월일: 2025. 4. 16.

발 의 자: 허성무・박지원・이광희

박선원 • 이재관 • 김동아

서영석 · 김성환 · 황정아

김문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과거 전원개발을 우선시하던 시대의 기본계획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무탄소 기술발전, 전기화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국내외 기후·에너지정책과 기술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복수의 시나리오별 모델링을 포함 하여 작성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충실성 확보 및 변화하는 에너지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법률 제 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공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복수의 시나리오별 모델링을 포함하여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	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	
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u>수립하여야</u> 한다.	<u>수립·공개하여야</u>
<후단 신설>	이 경우 기본계획은 복
	수의 시나리오별 모델링을 포
	함하여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
	<u>다.</u>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